

대학정보공시 자료제공에 관한 업무협약

한국대학교육협의회(이하 '대교협'이라 한다)는 네이버주식회사(이하 '네이버'라 한다)와 양 당사자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, 상호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의 공시정보 제공 및 활용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범위 및 담당자 지정) 대교협이 네이버(주)에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 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조 (기밀유지)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각종 기밀정보와 양 당사자의 공동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밀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시키지 않으며, 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.

제4조 (유효기간 및 연장)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 본 양해 각서를 수정하거나 종결하고 할 때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. 어느 한 당사자로부터 양해 각서의 종결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을 때 본 양해 각서의 유효기간은 3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.

제5조 (협약의 변경) 네이버(주)와 대교협은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 (해지)

1. 일방은 상대방이 본 양해각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서면통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, 본 양해각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해지할 수 있다.

2. 본 양해각서를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양당사자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양해각서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제7조 (공표) 양 당사자는 상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의 체결 사실 및 내용을 매스컴을 포함하는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알릴 수 없다.

제8조 (신의성실의 원칙) 양 당사자는 공시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, 본 양해각서의 합의된 내용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.

제9조 (법적구속력) 본 양해각서는 양사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3조 기밀유지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

제10조 (수정 및 변경)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.

2018년 3월 2일



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
대성디폴리스 A동 22~23층
한국대학교육협의회, 08504

회 장
장 호 성



NAVER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
네이버 그린팩토리, 13561

대표이사
한 성 숙

